

대구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4407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4. 28.

판 결 선 고 2021. 5. 26.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0. 22. 선고 2019가단434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5. 27. 접수 제689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증여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679,869원 및 그중 43,419,178원에 대하여는 200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4,260,691원에 대하여는 2008. 8. 20.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없으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백정현, 판사 허이훈, 판사 김민지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1.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 174.7㎡2.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시원트백물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87㎡

2층 75.15㎡

시원트백물조 슬래브지붕 단층연소 1㎡

